

이 있으며, 디자인 및 연구 개발과 관련한 품질관리는 생산과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해당 수수료는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생산지원비용에 해당됨

3) 본 예규에서 컨설팅 수수료는 생산지원비용과 실제지급금액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지급으로 결정

3. 쟁점 검토

쟁점 사안과 앞선 Ruling을 비교한 결과 검사 비용은 수입의류의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지 않음

-I가 독립된 제 3자인 T에게 지급한 검사 수수료는 E에게 또는 E의 이익의 위하여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으로 볼 수 없음

-검사수수료는 수입물품의 디자인 및 연구 개발과 관련이 없어 생산지원비용으로도 볼 수 없음

□ 결정(Holding)

검사 서비스와 관련한 비용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볼 수 없음

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생산지원을 포함한 법정 가산금액을 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b)(1) 또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대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b)(4)

2. 관련 예규

가. Ruling HQ542178

생산자가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검사 비용이 상업송장에서 물품금액과 별개로 구분되어 표시되었더라도 검사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을 구성함

나. Ruling HQ545753

1) 최종구매자는 용접 및 환승시스템에 결합 될 로봇을 시스템 생산자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생산자는 로봇이 시스템에 결합되기 전에 검사를 실행함

2) 인용된 Generra Sportswear Company 대 미합중국 사건(1990)판례에서, 연방순회법원(CAFC)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성질상 물품 대금이 아니라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 지급은 거래가격을 구성한다고 결정

- 미국 관세청(CBP)은 구매자가 검사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였더라도, 그 금액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으로 보아 실제지급가격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Generra Sportswear Company 대 미합중국 사건(1990)판례 인용

다. Ruling HQ542946/542774

1) 검사 비용의 과세 여부에 관한 논쟁은 완제품에 대한 검사가 미국으로 선적되기 이전에 행해졌다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음

2) CBP는 검사를 수행하는 주체가 독립된 제 3자인 경우 검사 비용이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라. Ruling HQ547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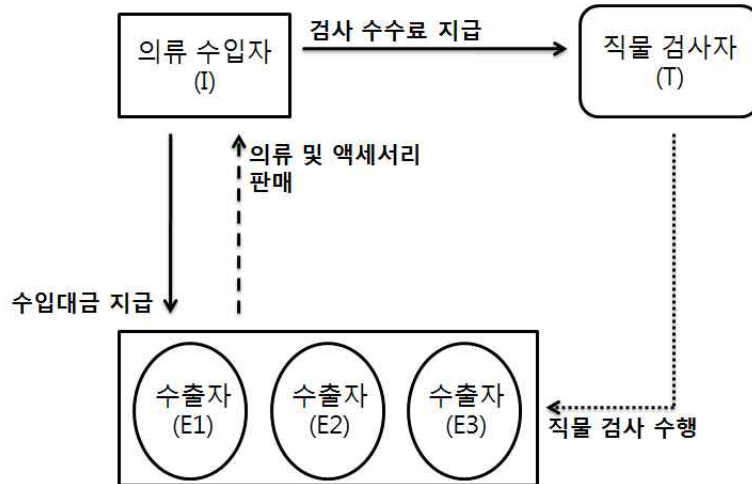
1) 의류 구매자는 해외에서 독립된 제 3자를 직물 컨설턴트로 고용함

2) 컨설턴트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검사를 수행하며, 구매자는 직물 컨설턴트에게 컨설팅 수수료를 직접 지급함

3) **구매자가 독립된 제 3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진정한 의미의 구매수수료이면 일반적으로 그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을 구성하지 않음**

4) 다만 정밀검사, 컨설팅 관련한 서비스 비용이 구매수수료인지 여부에 관해 논쟁

직물 검사 수수료의 실제지급가격 해당 여부
(HQ W563480, 2006,06,09)



□ 거래사실(Facts)

1. I는 다양한 국가의 다수 수출자(E1,E2,E3)로부터 의류와 액세서리를 수입하여 미국내에서 판매하는 소매상임
2. I는 수입물품의 생산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생산 이전 단계에서 직물 검사를 함
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된 제 3자인 T는 E가 직물을 구입하기 이전에 직물 검사함
나. I는 검사를 거친 직물을 E가 구매하거나 생산에 사용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검사 비용을 T에게 지급함
3. 수입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구매대리계약 관계에 있는 구매대리인이 직물 공급 및 검사 관리를 맡고 있음
4. I는 검사 시점에 직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E에게 직물을 생산지원하지 않음

□ 쟁점(Issue)

I가 T에게 지급하는 검사 수수료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 해당 여부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1. 법적 근거

수입물품에 대한 최우선의 과세가격결정 방법은 관세법(19 U.S.C) §1401a 규정의 거래가격방법이다. 동 규정은 거래가격에 대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